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승인 및 공표 명령 등 알림-필립스코리아(주)

1. 관련 : 의료기기법 제31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2. 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필립스코리아(주)(허가번호 : 제1246호)”에서 수입 · 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 (허가번호및모델명)	해당 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위해성 정도
필립스코리아(주) (제1246호)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수허10-812호, Sonalieve MR HIFU)	0,21774, 24,28	본건은 영업자(자발적)회수 건입니다. 필립스는 최근, Sonalieve MR HIFU 사용 설명서 (IFU) 의 지시 사항에 따라 직접 피부 냉각 장치 (DISC) 의 수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시술 중 DISC의 수위가 너무 낮아져 피부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애려로 시행하는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부품 추가 설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수 (부품추가 설치)	3
담당(조원경) 010-3165-9070					

3. 명령일자 : 2017. 12 .12. 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장(첨단의료기기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심혈관기기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정형재활
기기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구강소화기기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외진단기기과장), 식
품의약품안전처장(고객지원담당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사)대한치과
기재협회,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대한병원협회 귀하, 대한의사협회 귀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
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강강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
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실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
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
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실사과장)

주무관 이은하 사무관 이재근 의료기기안전 2017. 12. 12.
관리과장 김혁주

협조자

시행 의료기기안전관리과-9859 (2017. 12. 12.) 접수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http://www.mfds.go.kr>

전화번호 02-2640-4958 팩스번호 02-2640-1366 / leunha@korea.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